

○ ○ ○ ○ 검 찰 청

(전화번호)

(분류기호 및 문서번호)

수 신: 발 신: ○○○검찰청검사장대리

검 사: 인

제 목: 공무원 등 고소·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

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 제3항(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, 「군인사법」 제59조의3제1항, 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3제1항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의2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7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0조의2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)에 따라 통보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피 고 소<br>( 피 고 발 ) 인          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속 및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
| 사 건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| 년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사 개 시 일 자 | . . . |
| 죄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 병         |       |
| 피 고 소<br>( 피 고 발 )<br>사 실 요 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
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            |       |